MFDS/MaPP: GRP-MaPP-허가업무-00 (지침서-0987-01)

승인일: 2009

개정일: 2020. 12. 23. (2개정)

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

구분	소속 및 이름
작성자	허가총괄담당관 주무관 김성란
검토자	허가총괄담당관 사무관 채주영
승인자	허가총괄담당관 과 장 이수정

지침 · 안내서 제·개정 점검표

명칭

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

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제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등록대상 여부	□ 이미 등록된 지침·안내서 중 동일·유사한 내용의 지침·안내서가 있습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				
	☞ 상기 질문에 '예'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·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·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사유:						
	□ 법령(법·시행령·시행규칙) 또는 행정규칙(고시·훈령·예규)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?	□ 예■ 아니오					
	□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				
	□ 일회성 지시・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?	□ 예■ 아니오					
	□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?	□ 예■ 아니오					
	□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정리한 자료입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				
	☞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'예'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·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 지침·안내서 제·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						
지침·안내서 구분	□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? (공무원용)	■ 예(☞ <mark>지침서</mark>) □ 아니오					
	□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? (민원인용)	□ 예(☞ <mark>안내서</mark>) ■ 아니오					
기타 확인 사항	□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·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				
	☞ 상기 질문에 '예'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식 안내서 제·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	T제하시고 지침·					
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.							
2020 년 12 월 일							
	담당자 확 인(부서장)	김성란 이수정					

이 지침서는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 업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.

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('~하여야 한다'등)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본 지침서는 2020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"공무원 지침서"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(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)

※ 본 지침서에 대해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 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 : 043-719-2325 팩스 : 043-719-2300

<개요>

목적

• 이 지침서(편람)는 개량신약에 대한 기준,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
공개여부

공개

유효일

이 지침서(편람)는 발간일로부터 유효함

연락처

이 지침서(편람)에 대하여 문의사항 및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허가총괄담당관(전화: 043-719-2325)으로 연락바랍니다.

<목차>

- 1. 목적
- 2. 관련규정
- 3. 본문

1. 목적

- 이 지침서(편람)는 개량신약에 대한 기준, 대상 등을 명확히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 - ※ 참고 : 민원인은 「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매뉴얼」(식약처 홈페이지 > 법령/자료> 자료실 > 매뉴얼/지침)에 따라 허가사항을 신청함

2. 관련 규정

- 「약사법」
- 「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

3. 본문

3.1. 방침

- 본 편람은 의약품 허가사항 검토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본 편람은 개량신약의 대상, 적용 예를 제시하여 해당 의약품의 개량신약 인정 여부시 고려사항을 기술한 것이다.
- 본 편람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,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3.2. 서론

3.2.1. 들어가기

• 본 편람은 현재 품목허가 시 개량신약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

3.2.2. 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

- 이 편람은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. 따라서 이 편람은 이 규정 외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의 관련 조항과 함께 참고하여야 한다.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」(식약처 고시)

3.2.3. 개량신약 인정 대상

- (안전성·유효성 개량)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
 - ※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료
- (유용성 개량) 투여방법이나 투여 횟수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
- (진보성) 염변경·제제개선 등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

3.2.4. 개량신약 인정세부 인정 기준
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2조제9호가목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2조제9호나목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·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2조제9호다목
-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2조제9호라목
-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, 함량 또는 용법·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
-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2조제9호마목

3.2.5.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품목의 관리

• 「의약품의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22조(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 등) 규정을 적용한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참고.

- 3.2.6. 개량신약으로 신청된 민원 심사 자료 주요사항
-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료

3.2.7. 개량신약 인정 사례

- ①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
 -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합이나 분량 변경 등을 통하여 종전 품목의 부작용 발현을 감소시켰거나 약리효과가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
-〈적용 예〉

- √ 암로디핀과 로자탄 복합제로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
- √ 암로디핀·로자탄·클로르탈리돈 복합제로써 암로디핀·로자탄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
- √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로써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 개선 및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
- √ 리세드론산과 콜레칼시페롤을 혼합하여 비타민 D 결핍의 부작용 개선 등의 유용성을 향상한 골다공증 치료제
- √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아젤라스틴을 혼합하여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상승하고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알러지성비염 치료제
- ✓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복합제로써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상승하고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당뇨병 치료제
- √ 기허가 대장검사 전처치용 하제성분에 소르비톨이 추가된 복합제로써 안전성 개선 및 복약 수응도가 개선된 대장검사 시 전처치용 장세척제
 - ②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
 - 투여경로 변경을 통하여 안전성 또는 복약 순응도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
- 〈적용 예〉

√ 주사제를 경구제로 개발하여 복약 순응도 및 편리성을 개선한 위암 치료제

- ③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·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
 - 종전 의약품의 약리기전에 착안한 임상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 하는 경우

- 〈적용 예〉

√ 우울증치료제 성분의 약리기전에 착안하여 개발한 조루증치료제

- ④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
 - 원개발사 품목의 유효성분을 새롭게 염 변경하거나, 라세믹체 의약품의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이성체(enantiomer)만을 분리한 제품을 임상시험을 통하여 개발한 경우
 -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의 의약품은, 기허가에 사용된 염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인정

- 〈적용 예〉

- √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의약품으로 국내최초로 염변경하여 한국 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피부소양증 치료제
- √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이성체 의약품으로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,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
- ⑤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, 함량 또는 용법·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
 - 이미 허가된 품목의 제제개선 또는 용기개선 등을 통하여 생체 이용율 등을 향상시키거나, 종전 품목의 부작용을 감소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
- 〈적용 예〉

- √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필름코팅정을 서방성필름코팅정으로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소염 진통제, 근육이완제,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치료제
- √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나정을 서방성 캡슐, 펠렛으로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, 동퉁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제
- √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(1 회/주→1회/월)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골다공증치료제

3.2.7. 개량신약 미부여 사례

- ①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·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
 - 불인정 사유 : 국내 한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 미제출
- ②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, 함량 또는 용법 용량이다른 전문의약품
 - 불인정 사유 : 기허가 의약품에 비해 유효성분 용량감소에 따른 안전성 · 유효성 개선 미입증
- ③ 그 밖에 미부여 사례
- 가. 동반질환 치료 목적 복합제
 - 불인정 사유 : 동반하여 발생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동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복합제로서, 단순 복약순응도(복용약물 개수 감소) 이외 유효성 또는 안전성 개선에 대하여 미입증되고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
- 나. 병용투여 대체요법 복합제
 - 불인정 사유: 개개 주성분 단일제 허가사항에 병용요법이 기재되어 있는 병용 투여 대체요법 복합제(예: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병용투여로 적절하게 조 절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개개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)로서, 개재 주성 분의 조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개 주성분 단일제간 병용요법의 안 전성 유효성은 이미 입증된 경우

개정 이력

연번	연도	편람 코드	개정번호	편람명	작성자
1	2009	GRP-SOP-2009-00	제정	개량신약 인정 및 우선신속심사제도 운영지침	
2	2020	지침서-0987-01	개정	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	